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2. 20.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2월 20일(월) 14:00~17:51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23호, 제 24호 및 제32호, 제33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3년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3호 『(주)매일방송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4호 『(주)OOOOOOOO의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함.

▷ 제23호 안건 관련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2017년과 2018년의 감리는 1차 감리와 동일한 위반 행위로 이미 행정부의 과징금과 행정조치 그리고 법원의 형사처벌도 확정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또한 2017년~2018년 회계처리는 기존 회계처리가 수동적으로

현상유지된 것으로 고의가 아니라는 점과 금융감독원 2차 감리 전에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자진수정 공시하였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투자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고, 회계처리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위반사항도 모두 해소 됨. 이러한 점들 고려하시어 정상참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23호 안전 관련 진술인이 퇴장함.

▷ 제24호 안전 관련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과징금 조치를 재고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17년 이후 지적사항은 전적으로 피투자 회사의 회계문제에서만 기인함. 두 번째는 저희 회사는 동일한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믿고 지분법적용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기에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위반동기는 달리 판단되어야하므로 2017년, 2018년 위반동기를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세 번째, 저희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 착수 전 자진수정으로 자진감경이 적용되어야 함. 아울러 다음 사항도 정상참작시 고려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금감원 감리 전에 피투자회사의 회계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장기간 방치한 경우로서 가중사유의 적용 제외가 필요. 또한 위반행위는 모두 시정하였고, 외부감사인도 더 높은 준의 회계법인으로 감사계약 체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사는 사업보고서상 제

출대상 법인에도 해당되지 않은 비상장회사이고 당사의 주주는 다섯 명에 불과함. 다시 말해 투자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도 많지 않고 회계처리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실도 없음.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는 회계 및 재무업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24호 안전 관련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범시행 초기였고 형사처벌이나 방통위 처벌 등이 종결되었고, 경영 상황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임. 그다음에 새로운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이 그 사업연도 중에서 마지막 2개월이 적용대상이 되는데, 적용 전후의 과징금 규모의 격차가 크다는 것도 고려해야 함. 아울러 비상장법인이라거나 위법행위가 지금 현재 조치 이전에 시정되었다는 점도 과징금 산정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 新외감법이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과징금 제도도 도입됨. 본 안전의 경우에는 2018년 재무제표에 여전히 그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新외감법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치의 원인행위인 자기주식 과소계상은 이미 2011년에 이루어졌고, 이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조치를 받음. 그리고 2018년은 감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지 않는지 여쭙보고 싶음.

- (보고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함. 또한 新외감법상 과징금을 산정할 때 비상장사인 부분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함.

○ 각각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25호 『(주)레드로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오류는 평가를 그르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어느 항목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상 자산, 부채 또는 자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 더구나 과대계상액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약 4.3%에 불과한 금액으로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임. 또한 당사자들이 금융감독원의 사실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여 왔고, 당사자들이 그 위반동기에 부당이득의 취득이나 기타 불법적 요소는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들이 과거 귀 위원회로부터 중대한 제재처분을 받거

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없으며, 사법기관의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는 점들을 고려하셔서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2019년 연결 당기순손실 원인으로 872억 원이 자산손상으로 인한 부분은 감사인이 권고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인지?

▶ (진술인) 회사에서 감사 전 재무제표에 반영한 부분도 있고 제가 지적해서 추가 반영한 부분은 300억 원 정도임.

○ (위원) 이것 때문에 자산이 2018년에 1,200억 원에서 2019년에 316억 원으로 감소하게 된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불성실공시 때문에 거래정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불성실공시였는지?

▶ (진술인) 회사에서 과도한 회사채의 발행 공시를 했고 실제로 그 금액대로 자금조달이 안 되어서 별점 누적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됨.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금융상품 중에서 프로젝트 투자금의 손상과 관련

된 지적은 그 당시 회사의 특수산업성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회사 인터뷰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clear)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함.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거액의 손상으로 자산규모가 급감함에 따라서 위반의 중요도가 2018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19년 감사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공시 당시 회사가 거래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 다음에 감사인이 수정권고를 해서 손상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자산규모가 2018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해 위반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 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조치를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감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위원장) 제25호 안건은 정명회계법인에 대해서 '중과실 II 단계'를 '중과실 III단계'로 하여 과징금 1억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3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지정제외점수 40점으로 하고, 정명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함.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6호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7호 『○○○○○○(주) 및 □□□□□(주)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 DLS 구조는 ○○○○○(주)이 ♣♣에 설립된 ♣♣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DLS를 발행한 것을 □□□□□(주)이 특정금전신탁에서 편입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 그런데 본 건 DLS는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자본시장법령은 증권의 기초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구조 등이 상이하다면 자금조달 계획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최근 증

선위에서도 동일한 SPC가 발행한 Senior Note를 매입한 펀드라고 하더라도 Note 금리 등 일부 조건이 다르다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이 아니라고 하였음. 이번에도 기초자산 또는 DLS 발행조건 등이 일부 다르다면 달리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기초자산의 동일성 여부를 단순히 ♣♣ 펀드의 Class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즉, 회차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Class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간주함. 그러나 동일한 Class라 하더라도 각 시점마다 기초자산이 다르다면 사실은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설령 사실상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은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고객투자원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음. 따라서 설령 본 건 DLS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감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건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하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사기관 통보'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 및 행위자들은 본 건 DLS 발행이 공모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음. 본 건 DLS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각 회차별로 기초자산 발행조건 등이 상이해서 모두 다른 증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 ♣♣ 펀드와 같이 다수의 채권을 포함하고 있는 펀드의 경우, 채권가격 및 채권 구성종목이 수시로 변동되기 마련이어서 본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하지 않았음. 그런데 본 건 DLS는 공모규제 위반에 대해 인식도 없었고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없는 등 ▲▲▲▲과 ●●●● 사례에 비하여 위법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본 건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결론적으로 본 건 DLS는 기초자산, 투자위험, 손익구조 등이 상이하였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증권으로 볼 수 없음. 설령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액해 주시기를 바램. 그리고 무엇보다 행위자들은 공모위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본 건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당사 및 행위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는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은 행위자들이 간략히 의견진술하도록 하겠음.

- ▶ (진술인) ◇◇◇ 임. 해당 상품은 펀드연계 DLS로서 개별 회차들의 설정시마다 운용대상인 기초채권들의 가격이 다르고 각 회차들의 기준가격이 개별적으로 고시되어 다르며, 매 설정시 환율 헷지(hedge)가 개별적으로 다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함. 이와 더불어 당시 해당 증권의 발행사들도 본 사항을 문제 삼지 않고 증권의 발행을 진행함. 본인은 비록 말단 직원이었지만 □□□□□□(주) ●●●의 규정 등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부분을 결정하거나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 (진술인) □□□□□□(주) ★★★임. 본인은 ●●●에 2017

년 5월에 전입하여 그해 11월말쯤 ㉹㉹㉹㉹㉹ 팀장 역할을 맡으면서 본 상품을 인수받고 이후 다양한 ♣♣ 상품을 발행할 때도 ○○○○○○(주)을 통해 DLS 형태로 상품을 출시하였음. 본 상품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주)에서 DLS 회차별로 49인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서 그에 맞춰 상품을 진행함. 가입 시점에 따라 Class 내 채권 자산 구성이 달라지고 NAV가 별도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DLS 회차별로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했음. ●●●는 본사 관리부서로서 인센티브를 받는 조직이 아니고 ●●● 내 팀장 위치에서 제안서를 함께 검토하고 지점응대 역할을 하면서 당사의 규정 등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그런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주) ☆☆☆임. 저는 ♣♣ 펀드 DLS 판매 당시 ●●● 부서장임. ●●●는 시장에서 직접 상품을 소싱(sourcing)하거나 주도적으로 상품을 운용하는 부서가 아니고, 국내 IB가 소싱(sourcing)한 상품을 고객 관점에서 상품성을 검토한 후에 내부프로세스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후 상품을 출시하는 판매부서임. 본 상품 또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내부 상품성 검토와 당시의 상품출시 절차를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함. 당시 공모규제 회피 관련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본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DLS 발행사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회차당 49인의 제한 준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함. DLS발행의 주체인 발행인이 확인(check)해야 할 문제이고 단순판매사인 신탁업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

고 생각함. 더욱이 ♣♣ DLS의 경우는 동일한 Class를 기초자산으로 한 경우라도 각 회차별로 투자시점이 상이하였으며 각 회차별로 기초자산, 투자위험, 손익이 달라 가입시점마다 다른 상품으로 이해함. 본 상품이 판매시점의 신탁업자가 주선인에 해당된다거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문제되리라고는 업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발행인에 있는 것으로 발행인이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음. ○○○ 7년 동안 주선인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지난번 ㄷㄷㄷ DLS 감독기관 조사시 처음 알게 됨.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 모두는 법을 어겨가며 담당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음. 본 상품을 1억 원 더 팔았다고, 한 계좌 더 팔았다고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조직이 아님. 고정급여를 받는 관리직군임. 오로지 고객 입장에서 상품성을 검토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신탁업자의 역할을 수행함. 이를 감안하여 '수사기관 통보'에 대해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

- (위원) ㄷㄷㄷ ㄷㄷㄷㄷ ㄷㄷㄷㄷㄷ ㄷㄷㄷ ㄷㄷㄷㄷ ㄷㄷㄷㄷ ㄷㄷㄷㄷ에 투자를 했는데 ㄷㄷㄷㄷ ㄷㄷㄷ에 투자하는 자산이 매순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동일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신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계속 바뀔 텐데, 기초자산을 하단까지 계속 타고 들어가

서 기초자산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면 극단적인 경우 회사마저도 6개월 사이에 재무적인 변동이 급격한 경우 동일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지?

▶ (진술인) 일단 자본시장법령에서 기초자산들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동일성 여부로 사실상 동일한 증권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 A펀드에서 1월1일에 A종목 80%, B종목 20%, 그런데 7월1일에 A종목 20%, B종목 80%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월1일 A펀드와 7월1일 A펀드가 같은 A펀드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산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한 증권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위원) 지금 ☆☆☆, ★★, ◇◇◇ 중 어느 진술인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세 분이 관여를 한 것은 맞는지?

▶ (진술인) 저희 팀원 간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중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은 ●●●장인 저한테 먼저 보고를 해서 일단 커뮤니케이션 하고 최종적으로 본부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상품이 출시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음.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 간에 협의(study)를 통해서 안이 마련이 되면 그 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저 그리고 본부장,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함.

○ (위원) 그런데 여기 전결규정으로 ☆☆☆ 부서장님께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던 것 아닌지?

- ▶ (진술인) 네. 그런데 ○○○가 전에 차이나스 월(Chinese Wall) 문제로 인해서 □□□□ 이런 그룹에 속함. 그런 쪽에서 본부장님이 전체적인 신탁업무를 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장이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가 결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조직이 개편 됐는데 그때 직제 문제를 업데이트하지 못해서 최종결정자가 저로 되어 있기는 함. 그러나 모든 상품은 내부적으로 저희 직급 상관인 본부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내부 상품 출시프로세스를 타서 상품이 출시됨.

- (위원) ♣♣ 또는 형식적인 발행자인 ○○○○○○(주) 등과 발행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

- ▶ (진술인) 그러니까 DLS 형태에서 어차피 발행의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문(part)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이 발행사로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confirm)이나 지속적인 회의, 이런 것을 함.

- (위원) ☆☆☆ 진술인께 여쭙어 봄. ♣♣파트너스 ♪♪♪ 대표와 ☒☒☒☒☒를 체결하셨는데 이때 ○○○○○○(주)과도 논의가 좀 되었는지? 아니면 ○○○○○○(주)과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는지?

- ▶ (진술인) 그때 감독기관 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

히 그때 당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림. 서명(sign)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한 30조 원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쪽에만 올인(all in)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AB쪽을 다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확인(check)을 못 함.

- (위원) 실질적으로 논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기억에 없으시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투자원금의 4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어떠한지?

▶ (진술인) □□□□□□(주) ▲▲▲임. 환매중단이 2020년 7월에 이루어지고 2021년 7월에 재연장되면서 고객들의 고충이 심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투자원금의 40%를 가지급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함.

- (위원) 회차별로 평가가격(NAV)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NAV가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런데 NAV가 결정되는 것이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103으로 시작해서 기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음. 납득이 되지 않는 NAV 구조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사실 NAV 같은 경우에는 ♣♣ 쪽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운용사가 자산을 평가해서 투자자들에게 통보해 주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는 30페이지 보시면 ●●●별로 NAV 통보 받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보 받으면 “아, ●●●별로 이 정도의 NAV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함.

○ (위원) 그래도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아시지 않으셨는지?

▶ (진술인) 담당자들과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는데 NAV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되는지는 사실 운용사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쪽에서 파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들었음.

○ (위원) ♣♣펀드에 투자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 펀드에 어떤 자산들이 편입되는지를 받아 보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처음에 이 DLS를 발행할 당시에 향후 이 ◆◆◆ ◆에 뭐가 편입될지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인지?

▶ (진술인) 발행할 시점 당시에 뭐가 편입될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님. 그런데 해당 시점, 시점마다 채권 구성종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사후적으로 받아서 알고 있었음.

- (위원) 여기 이 표를 정리해 주신 것은 발행 당시에 인지한 사실이 아니라 사후에 보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인지?
- ▶ (진술인) 맞음. 그런데 담당자들의 인식 자체는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
- (위원)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일종의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를 한 것인지?
- ▶ (진술인) 네. 그리고 굉장히 여러 종목에 투자하고 수시로 자산이 변동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
-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아까 초반에 여쭙어 봤던 것인데 기초자산의 동일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 펀드가 발행하는 ㉠㉠ ㉠㉠㉠ ㉠㉠㉠㉠ ㉠㉠ ‘◆◆◆ ◆’에 투자한다.” 그 시리즈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발행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
- ▶ (진술인) 국내에서 자금이 모집되면 DLS 발행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 펀드에 유입이 될 텐데, 그러면 일정 등급 이상의 채권을 편입하는 것에 시차를 둘 수밖에 없음. 자금이 모집되면 그 구성종목 자체가 변동될 것이라는 것

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수준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금감원에 질의함. 이것이 DLS 발행 당시 기초자산이 운용사 ♣♣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처럼 보이는데, 발행 당시에는 그 펀드 ◆◆◆ ◆에 어떤 자산이 편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편입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기초자산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이 펀드를 기준으로 하는지? DLS의 기초자산으로서 이 펀드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편입되는 그 자산을 보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후에 편입되는 자산은 발행 당시에는 사실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떠한지?
 - (보고자) 지금 본 건 같은 경우에는 ♣♣ 펀드가 하위권펀드 형식으로 해서 Class 별로 구분되어 있음. 그래서 DLS 발행 자체가 ♣♣ 펀드 전체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Class 별 NAV에 기초해서 조기상환이 결정되도록 하는 DLS이기 때문에 Class 별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음.
- (위원) 금감원은 Class에 편입된 구체적인 자산까지 보고 동일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지?
 - (보고자) 네. 발행 당시에 볼 수도 없고 펀드의 특성상 편입 자산으로 관리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편입자산을 하나하나 따져 볼 수는 없음.

○ (위원) 그것이 아니라 블라인드펀드의 수익증권의 동일성을 본다는 개념으로 보셨다는 건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리고 아까 회사의 양벌규정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판단이 있으신지?

- (보고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자 자체가 법인이고 결국은 거의 4년에 걸쳐서 1조 원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스크(risk)관리나 상품심사 같은 관리감독이 법인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법규위반 사실이 발생했다고 봤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해태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함.

○ (위원) 2021년 5월 10일 시행령 제5호에 발행이 다른 경우에도 합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발행이 다른 경우에도 다 2018년 5월1일에 시행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 (보고자) 아까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리즈⑤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은 전례가, 그 이후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주선인 주도로 운용사를 바꾸어서 발행했던 사안에 대해서 투자자의 수를 합산해서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위반 사항에 다 포함을 시키기는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강력히

주장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위원) 만약 시리즈⑤를 위반으로 보지 않으면 고의성은 없
어지는 것인지? 이것이 2018년 5월1일 이후 발생한 부분이
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로 보신 것 아닌지?
 - (보고자) 아님. 시리즈③과 ④도 2018년 5월1일 이후에 발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판단해서 과징금 계산할 때 '중
과실' 부분과 '고의' 부분을 나누어 계산하여 합산함.
- (위원) 그 다음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를 배상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
했는데 금감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가지급금은 공시의무위반
에 대한 피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사유로 보기에선 곤
란하다는 의견임.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과징금 감면조항 자체가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기본 과징금을 감경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데, 본 건 가지급금은 아직까지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에서 우선 가지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배상액이라고
볼 수 없어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함. 과거 b
b b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감경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음.
- (위원) 과거에도 이와 같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 (보고자) 작년에 b b b b DLS 관련 공모규제 위반 건을 처리할 때도 □□□□□□(주)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감경은 하지 않았음.
- (위원) 이것은 혹시 안 했던 이유가 귀책사유를 인정한 배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일단 먼저 선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배상이 아니어서 반영하지 않았던 것 아닌지?
- (보고자) 맞음. 손해액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가지급 형태로 자금을 지원한 형태로 봄.
- (위원) 지금 □□□□□□(주) 쪽과 금감원의 의견이 다른 것 같은 것이 □□□□□□(주) 쪽은 ●●●별로 NAV가 다르다고 얘기했던 것 같음. 그런데 금감원 말씀은 Class별로 동일한 NAV이니 동일한 증권으로 봐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 (보고자) 회차 별로 조기상환조건이 되는 NAV는 Class NAV임. 조기상환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Class NAV를 전환해서 동일한 조건에 상환이 되게끔 만듦.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입한 시점마다 NAV가 다른데, 어제 가입한 NAV와 오늘 가입한 NAV가 다르다면 오늘 가입한 NAV를 어제

NAV와 같은 것으로 해서 재산정한 것이 ●●● NAV임.

- (위원) 그러면 일종의 수정 주가처럼 어떤 특정한 날짜에 다른 ●●●에, 다른 NAV를 시간이 가면서 상호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그 변화량은 똑같은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 수익률은 똑같은지? 수정 주가가 똑같다면 그 변화액은 똑같은지?

- (보고자) 맞음. 변화된 ●●● NAV는 동일하게 움직임.

- (위원) 시리즈⑤의 경우에 발행사를 나눈 것이 있는데, 투자자 수가 48인, 34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발행사를 나눈 것은 누가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 (보고자) 그것은 □□□□□□(주)과 ○○○○○○(주) 사이에서 발행수수료와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잠깐 ○○○○ ○○(주)이 발행을 안 하고 □□□□□□(주)이 2회차에 걸쳐서 발행을 했었고 발행수수료를 올려서 ○○○○○○(주)이 다시 발행한 사례임.

- (위원) 공교롭게도 48인, 34인으로 이것을 50인 한도로 잘라서 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 (보고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함.

-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행사를 2개로 나눈 배경은 공모규제 회피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인지?
- (보고자) 그런데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측면에서 발행인이 누구였나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고, 애초에 전체 시리즈로 4년에 걸쳐서 계속 발행을 해 왔던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 하에서 두 발행인과 주선인 사이에서 발행수수료 문제 때문에 잠시 두 번에 걸쳐서 ○○○○○○(주)에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주)에서 직접 발행을 했었고, 바로 다시 ○○○○○○(주) 쪽에 발행수수료를 많이 올려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함.
-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금감원에서 조사하신 부분을 다 존중함. 다만, 향후 다른 절차에서 또 바뀔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법개정이 발행인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기초자산 같은 경우에는 ◆◆◆ ◆에 편입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같은 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 ◆의 발행조건을 기준으로 본다는 전제 하에서 금감원의 의견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행회사가 다른 경우도 ‘고의’로 볼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리즈⑤의 경우에는 ‘중과실’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함. 그다음에 양벌에 대해서는 이 뒤에도 □□□□□(주) 건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징계사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더 제도적으로 정비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가 ‘수사기관 통보’로 직접적인 행위자와 같은 형태로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그래서 저는 이 행위자분들만 일단 ‘수사기관 통보’로 보내고

필요하다면 정보사항 정도로 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함.

- (위원) 저는 금융감독원 원안에 동의함. 일단, □□□□□□(주)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통보' 할 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이 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건들이 □□□□□□(주)과 ○○○○○○(주)에서 이런 위반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주)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기관 통보'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음. 즉, □□□□□□(주)과 ○○○○○○(주)을 같이 묶는 것은 '고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중과실'로 하고, '수사기관 통보'가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두 가지 의견에 공감함. 아까 제가 한편으로는 다른 증권으로 인지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증권으로 인지했을 수도 있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무자의 입장이었다면 금감원 의견처럼 기초자산이 특정한 ♣♣ 펀드의 Class로 보고 여기에서 수시로 탭(tap)을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동일한 기초자산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그렇게 금감원 의견과 같고, 특히,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의견 드림.

- (참여자) 어떻게 판단하시더라도 위법성은 없고 재량범위에 있는 것 같음.

(16시 31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 (위원장) 제27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시리즈 ⑤의 발행인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견차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2021년 5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확실히 발행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 그래서 그 이전의 발행의 경우에는 2018년 5월 이전에 '중과실'로 봤던 것처럼 발행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이전에는 '중과실'로 의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증선위원들의 합의 내용임. 그리고 양벌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동일성, 시리즈 펀드에 대해서 □□□□□□(주)이 여러 위규 사항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벌규정으로 해서 같이 '수사기관 통보'하는 금감원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음. 결론적으로 시리즈 ⑤에 대해서만 '중과실'로 의제를 한다면 과징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계산해 주실 수 있는지?

- (보고자) 일단, 안건 5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면 ○○○○○○(주)에 대해서 발행인으로서의 과징금이 종전 8억 7,400만 원에서 8억 6,030만 원으로 1,370만 원이 감소함. □□□□□□(주)의 주선인으로서의 과징금도 동일한 금액임. □□□□□□(주)의 발행인으로서의 과징금이 7,040만 원에서 5,870만 원으로 1,170만 원이 감소함.

○ (위원장) 제27호 안건은 시리즈⑤에 대해서 발행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과실'로 보아서 ○○○○○○(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8억 6,030만 원으로, □□□□□□(주) 주선인 부분에 대해서도 8억 6,030만 원으로, 그리고 □□□□□□(주)의 발

행인 부분에 대해서는 5,870만 원으로 과징금을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28호 『NH투자증권(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이 설명함.

- (위원) 지금 월별로 발행한 것은 따로 보았는데, 같은 월 내에 발행한 다른 회차 DLS는 같이 묶고 다음 달은 따로 보셨는데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블룸버그 티커(ticker)도 다르고 그리고 기초, 기말 자산가격도 다르고 따라서 수익구조가 다르다고 설명을 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종의 락업(Lock up)이 1년 걸려 있고, 환매가 1년 후에나 가능한데, 실제로 자산이 비슷하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2월에 발행한 것과 3월에 발행한 것은 실제로 11개월만큼 오버랩(overlap)이 있음. 물론 들어간 가격은 2월에 발행한 것은 3월 첫 번째 가격이 P0이고 3월에 발행한 것은 4월 첫 번째가 P0가 맞는데 그리고 빠져 나온다고 해도, 각각 12개월 후에 빠져 나온다고 해도 11개월만큼의 오버랩(overlap)이 존재함.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 2월 발행, 8월 발행의 경우에는 6개월 밖에 오버랩(overlap)이 없지만 2월과 3월의 경우에는 12개월 중에 11개월이 같다는

말임. 물론 들어간 가격과 나온 가격이 당연히 기술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실질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블룸버그 티커(ticker)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건지?

- (보고자) 본 DLS의 기초자산 펀드는 폐쇄형 펀드로서 매월 첫 번째 영업일만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그래서 투자될 때 당시에 편입자산이 확정(fix) 되어 있었고 그 다음 달에 갈 때는 또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기초 자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봄.

○ (위원) 완전 다른 기초자산이라는 말씀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2월달과 3월달이 그러한지?

- (보고자) 네. 펀드 자체가 폐쇄형이었고 투자 자체가 매월 첫 번째 들어가는 것만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전에 투자자들의 투자한 것은 일종의 예약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모든 예약을 모아서 그 다음 달 첫 번째 영업일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자산이 픽스(fix)되어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9호 『컬러레이홀딩스 등 28개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Equities First Holdings, LLC는 2002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후에 전 세계 8개국, 12개 사무소(office)에서 동일한 방식의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에도 2020년에 에퀴티스퍼스트 코리아가 설립되었고 오늘 편의상 미국법인, 한국법인으로 말씀드리겠음. 거래방식은 일정한 자금수요가 있는 고객들로부터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통해서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것인데 한국 상장주식에 관해서 한국법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직후에 다시 미국법인과 동일한 거래를 Back to Back방식으로 체결함. 위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법인은 그동안 한국에서 총 27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했고 그중 2개 종목에서 5% 보고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임. 금감원에서는 본 건 위반동기가 ‘고의’이고, 위반결과도 ‘중대’라고 보셔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알고있음. 그러나 본 건은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선 위반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릴. 5% 보고의무는 미국법인이 진출한 세계 여러 나라에 공통적인 것임. 그리고 미국법인의 투자는 경영권과 무관함. 따라서 5% 이내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실제로 각국 소재 사무소(office)에서도 5%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그러나 본 건은 거래고객이 외국인 주재인 관계로 한국법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미국법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함. 최초 거래 이후 2~3차례에 걸쳐서 추가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법인을 통해서 5% 보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못함. 즉, 한국법인이 관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미국법인은 5% 초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는 실수가 발생했던 것임. 이와 같은 경위를 보더라도 미국법인의 보고의무 위반을 고의로 볼 수 없고, 평소 한국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보고의무를 준수해 온 미국법인이 이 건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할 동기나 목적도 없었음. 특히, 미국법인이 경영참여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투자자이고 최대주주도 아닌 점들을 고려해도 그동안 '수사기관 통보' 조치 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음.

○ (위원)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셨거나 개선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 (진술인) 계속 증권사와 협의하는 부분임. 일단, 금감원에서 미인가 이슈(issu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려를 표시하셨던 부분들은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중개인이 아닌 당사자끼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려함. 그래서 저희가 바꾼 프로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소통, 법률적으로 거래와 관련된 의사소통은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바꿈. 사실 저희는 종전에 중개업무를 하더라도

증권사는 당연히 고객보호의 의무가 있고 금소법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든간에 그런 의사소통의 매커니즘의 창구라고 하는 것을 증권사를 통해서 함으로써 무인가 요소라든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라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명백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함. 그다음에 중개약정서도 저희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증권사의 책임, 각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한 내용의 약정서도 다시 보완해서 준비함. 그다음에 마진 관리나 증권관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보완을 해서 하고 있음. 그리고 저희는 언제든지 금융감독기관이 우려하는 바를 반영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협의만 해 주신다고 하면 시스템상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지적만 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 부분을 반영해서 걱정 없이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다만, 지금 이 사안이 수사기관 통보사안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금감원이 그런 부분까지 나서서 어떻게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는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음. 그래서 이것이 잘 정리가 되면 저희는 금감원에 찾아가서 구체적인 사안들, 우려되는 지점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영업 할 생각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5%를 넘기지 않는, 경영참여 의도가 없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여서 자조심 위원님들의 다수의견과 같이 '중과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임.

- (위원) 저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자조심 의견에 동의함.
- (위원) 저는 다른 의견 없음. 두 분 의견과 같음.
- (위원장) 제29호 안건은 자조심 심의 결과대로 Equities First Holdings, LLC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의제하여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0호 『(주)금호에이치티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7시 0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 의결안건 제31호 『(주)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의 경우 애초에 위반사실. 즉,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본 건에서는 설명서 교부를 체크(check) 표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뿐이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는 그 어떤 입증도 이루어진 바가 없음. 표시(check)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법령상 근거 없이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원) 설명서 교부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지만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실제로 설명서를 교부했다는 증거는 있는지?

▶ (진술인) 없음.

- (참여자) 자료에서 '실제 설명서는 교부되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거 없이 추정하신 것인지?

- ▶ (진술인) 맞음. 경험칙상 이런 상품을 설명서 하나도 없이 그냥 설명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희 의견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제재대상자 소명 중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위반 건수에서 제외가 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보고자) 경위서를 받고 입증자료를 제출했으면 위반사례에서 제외함.
- (위원) 은행은 설명의무는 있으나 설명서 교부했다는 것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인지?
 - (보고자) 자본시장법은 설명서 등 제공사실의 증빙자료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금감원 검사 시에 3영업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 (주)하나은행은 이러한 자료를 금감원 검사 시에 제출하지 못함. (주)하나은행 DLF 관련 재판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음.
- (위원장) 동 안건은 과태료 부과절차를 고려하여 조속히 안건을 의결하고 금융위에 부의하도록 하겠음. 제31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아울러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32호 『(주)카카오뱅크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설명함.

- (위원) 여기는 결국 비대면 판매를 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유형의 영업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사례는 없는지?

- (보고자) 지금 현재 비대면 판매에 따른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에 입각해서 온라인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함. 특히, 온라인판매의 경우 설명의무가 충실히 안 될 수 있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2022년 8월에 온라인설명 의무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발표한 바 있음. 그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따라서 판매프로세스와 내부통제기준이 제정되도록 하고 있음. 향후 본인가 신청 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할 예정.

- (위원)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판매를 전제로 하는 인뱅이니까 마이데이터 같은 핀테크 상의 여러 가지 강점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있지만, 계열판매가 적을 것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모델 같은 것을 실제 인가심사를 하면

서 보셨는지 궁금함. 온라인 판매상의 부작용, 어떻게 방지방안을 보셨는지,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같은 전략 쓰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에 대해 참고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저희가 온라인펀드판매 관련된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온라인펀드판매에 특화되어 있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내규 제·개정이라든지, 그런 판매프로세스를 구축했는지를 심사할 때 확인함. 그리고 온라인펀드판매에 따른 투자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민원상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민원상담처리 등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채널을 운영할 계획 등을 확인함.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는 온라인펀드판매가 편리성이 있는 만큼 민원상담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 민원상담 전문인력을 충분히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33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51분 폐회)